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471호
----------	-------

2016. 10. 14.(금)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김영주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9월 27일
- 회부일자 : 2016년 9월 28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10월 7일

-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영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충북의 자살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확대 개선을 통해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를 도모하고,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용어 변경 및 약칭표기 개정 (안 제2조, 제3조, 제4조)
  - (현행) 주민 → (개정) 도민
  - 제1조 목적조문에 사용된 약칭을 제2조로 옮김
- 교육감의 책무 및 홍보·교육 활동 조항 삭제
  - (현행) 제5조, 제10조제4항
- 위원회 구성 확대 (안 제6조)
  - 위원수 : (현행) 10명 이내 → (개정) 15명 이내
  - 위원장 : (현행) 충청북도 3급 이상 공무원 → (개정) 행정부지사
  -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확대 (추가)
    - 당연직 : 여성정책관
    - 위촉직 :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 추천 각 1명

##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가. 조례안 제출 배경

- 본 조례안은 충북의 자살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확대 개선을 통해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를 도모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목적)에 약칭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약칭표기를 제2조로 변경하고,
-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는 ‘주민’ 을 도 조례에 부합한 ‘도민’ 으로 변경하였으며,
- 현행 제5조 및 제10조제4항의 교육감의 책무 및 역할 규정을 삭제하였음.
  - 이와 관련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시행령」

- 제7조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대해 실시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를 전제로 교육감의 책무 등을 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 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별도의 행정시스템과 관련 자치법령을 두고 있는 바, 도 조례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됨.
  - 따라서, 현행 제5조 및 제10조제4항의 삭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시키고,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 현행 ‘10명 이내’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늘리고,
  - 위원장을 현행 ‘충청북도 3급 이상 공무원’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하며,
  -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 정책관’을 추가하고, 위촉직으로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 추천 각 1명’과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였음.
  - 이는 충북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 제2항의 경우, 현행 조항이 인용한 ‘정신보건법 제13조의2’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규정한 것으로, 도 센터 설치와 부합하지 않는 바, 이를 ‘「정신보건법」 제13조’로 변경한 것은 적절함.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다. 종합 의견

- 자살문제와 관련해 충북은 2013년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시·도 중 세 번째 이내의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바,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강화 측면에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법률적으로도 타당함.

① **자살 사망자 수 및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사망자수	자살률	사망자수	자살률	사망자수	자살률
전국 계	14,160	28.1	14,427	28.5	13,836	27.3
서울	2,391	23.8	2,560	25.6	2,467	24.7
부산	1,050	30	1,013	29	1,000	28.7
대구	601	24.2	666	26.8	624	25.2
인천	872	31.2	868	30.6	834	29.1
광주	370	25.4	331	22.6	349	23.8
대전	382	25.3	363	23.9	408	26.8
울산	263	23.2	284	24.8	293	25.4
세종	43	41.6	23	19.7	25	18.1
경기	3,215	27	3,369	27.9	3,139	25.7
강원	583	38.3	587	38.5	563	36.8 (1위)
<b>충북</b>	567	<b>36.6</b>	543	<b>34.8</b>	493	<b>31.5</b> (3위)
<b>충남</b>	746	37.2	757	37.4	746	<b>36.5</b> (2위)
전북	544	29.2	553	29.7	535	28.8
전남	595	31.3	583	30.8	556	29.4
경북	871	32.5	833	31.1	762	28.4
경남	886	26.9	902	27.3	880	26.5
제주	181	31.5	192	32.9	162	27.2

\* 자료출처 : 통계청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이하 “도” 라고 한다)” 를 “충청북도”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 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주민” 을 “도민”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 을 각각 “도민” 으로, 같은 항 제2항 중 “취 해야” 를 “취해야”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 을 “도민” 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을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을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충청북도 3급이상 공무원이”를 “행정부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자살예방 전문 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

제6조(중전의 제7조)제3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6.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

제6조(중전의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중전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를 “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제8조(중전의 제9조)에 제1항 중 “주민”을 “도민”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 중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u>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u>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충</u> <u>청북도</u> ----- ----- ----- ----- -----.</p>
<p>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u>도</u>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p> <p>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u>충북도</u> <u>민(이하 “주민“이라 한다)</u>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p>	<p>제2조(기본정책) ① ----- ----- ----- ----- <u>충</u> <u>청북도(이하 “도“라 한다)</u> ----- -----.</p> <p>② ----- ----- ----- <u>“도민“</u>----- -----.</p>

<p>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u>주민</u>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p> <p>② <u>주민</u>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u>취</u>해야 한다.</p>	<p>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u>도민</u>- ----- ----- ----- -----.</p> <p>② <u>도민</u>- ----- ----- ----- ----- ----- ----- <u>취</u>해야 -----.</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u>주민</u>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u>도민</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은 <u>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다</u>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제6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① · ② (생략)</p>	<p>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p> <p>① <u>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u></p> <p>② <u>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충청북도 3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 중 교육청 관련 공무원 1명을 당연직으로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자살예방 전문 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u></li> <li>2. <u>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u></li> <li>3. <u>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li> </ol> <p>&lt;신설&gt;</p>	<p>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p> <p>① <u>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u></p> <p>②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 행정부지사가 -----.</p> <p>③ <u>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u></li> <li>2. <u>자살예방 전문 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u></li> <li>3. <u>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u></li> <li>4. <u>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u></li> </ol>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④ · ⑤ (생 략)</p> <p>⑥ <u>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⑦ (생 략)</p> <p>&lt;신 설&gt;</p>	<p>5. <u>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u></p> <p>6. <u>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u></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u>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u>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자살예방센터</u>를 설치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u>인정하는 업무</u></p> <p>② <u>도지사 및 시장·군수</u>는 제1항에 따른 <u>자살예방센터</u>를 <u>정신보건법 제13조의2</u>에 따른 <u>정신보건센터</u>에 둘 수 있다.</p>	<p><u>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u> ----- ----- --- <u>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p> <p>② <u>도지사</u>----- ----- <u>센터</u>를 「<u>정신보건법</u>」 제13조----- -----.</p>

<p>③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 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③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u></p> <p>④ <u>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u></p>
<p><u>제9조 (자살통계 분석 등) ①</u> 도지사는 <u>주민</u>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p>	<p><u>제8조 (자살통계 분석 등) ①</u> -----  --- <u>도민</u> -----  -----  -----.</p>
<p><u>제10조(홍보·교육 등) ① ~ ③</u>  (생 략)</p> <p>④ <u>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9조(홍보·교육 등) ① ~ ③</u>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제11조 (생 략)</u></p>	<p><u>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u></p>

<p><u>제12조(민간단체 지원) ①</u>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안에서</u>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u>제11조(민간단체 지원) ①</u> ----- ----- ----- <u>범위에서</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13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u>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u>알게된</u>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u>아니된다.</u></p>	<p><u>제12조(비밀누설 금지)</u> ----- ----- ----- <u>알게 된</u> - ----- <u>아니 된다.</u></p>
<p><u>제14조</u> (생략)</p>	<p><u>제13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p>

## 관계법령 발취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